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0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79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리트코(박종운), ② 대구교통공사(김기혁)

나. 전화번호 : ①031-884-0859, ②053-640-214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49호

3. 명칭 :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환기시설,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양방향 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에 상관 없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제거하여 지하철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하철 역사 주변의 대기질까지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단위유닛형 집진셀의 적용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풍속(13m/s)과 고풍량에 적합하며 자동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다.

<범위>

최대풍속 13m/s에서 90%이상 집진효율의 양방향 전기집진기술을 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저감기술로 대전부를 개량하여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고, 자동운전 및 자동세척을 적용한 기술

5. 보호기간 : 2018.10.10. ~ 2026.10.09.(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